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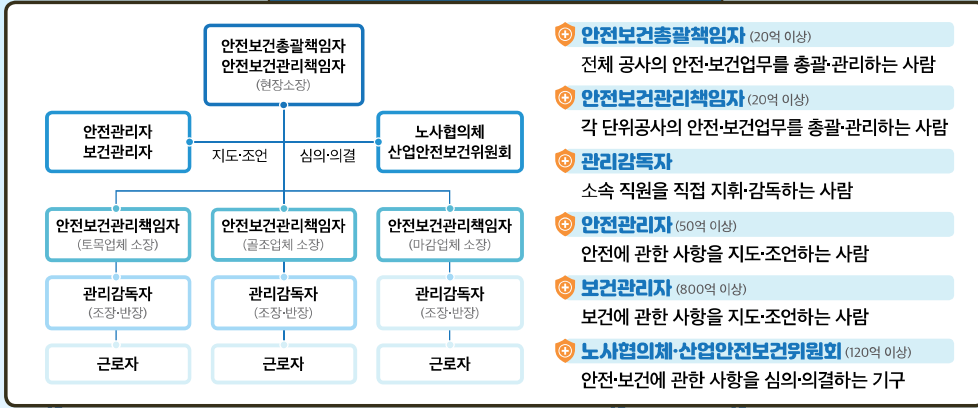
#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## 안전보건관리체계

제15~18조, 제24조, 제75조

## 안전·보건조치

제38~40조



- ⊕ **안전보건총괄책임자** (20억 이상)  
전체 공사의 안전·보건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사람
- ⊕ **안전보건관리책임자** (20억 이상)  
각 단위공사의 안전·보건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사람
- ⊕ **관리감독자**  
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사람
- ⊕ **안전관리자** (50억 이상)  
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·조언하는 사람
- ⊕ **보건관리자** (800억 이상)  
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도·조언하는 사람
- ⊕ **노사협의체·산업안전보건위원회** (120억 이상)  
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

사업주는 추락, 붕괴, 기계기구, 전기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**안전보건조치**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.

“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사항은  
『안전보건규칙』에서 정함”

(다음장 참조)

## 위험성평가

제36조

사업주·근로자가 스스로 유해·위험 요인을 함께 찾아내어,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합니다.



-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**“최초평가”**
- 기계·장비 등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**“수시평가”**
-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 **“정기평가”**

\* 월·주·일 단위 **상시평가** 활용 가능(위험성평가 고시 제15조)

“유해·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”

## 안전보건교육

제29~31조
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**TBM**

작업전안전점검

구분	기초안전보건교육	특별교육
대상	건설일용근로자	위험작업 일용근로자
시간	4시간 이상(지정기관)	2시간 이상
내용	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등	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

작업 시작 전 도어서 공구상자(Tool Box)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작업계획 및 안전확보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(Meeting)

## 작업중지

제51~52조



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**사업주**는 “**작업을 중지**” 하여야 하며, **근로자**는 “**작업을 중지하고 대피**” 할 수 있습니다. \*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 
“**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작업중지**”

## 산업재해 발생보고

제57조

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**산업재해조사표**를 제출하여야 합니다

**이차사고**

산업재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

이차사고 신고·관리는 재해예방활동의 기본!

“중대재해는 지체없이 119·지방노동관서로 신고”

## 도급인(원청)의 의무

제63~64조

도급인(원청)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(하청)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### 안전보건협의체

도급인, 수급인  
<원하청 소장, 월 1회>

작업시작 시간, 연락 및 대피 방법, 위험성평가 등 협의

### 순회점검

도급인  
<원하청 소장, 격일 1회>

현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

### 합동안전보건점검

도급인, 관계수급인, 근로자  
<원하청 소장 + 근로자, 격일 1회>

현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점검

### 정보제공

작업 주의사항 및 안전보건수칙 제공

### 교육지원

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

### 은재작업 관리

관계수급인 간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

##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

제69~71조

###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

**도급인(원청)**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,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할 수 없음

### 공사기간의 연장

**도급인(원청)**은 자신의 책임으로 착공지연, 시공중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,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
(자연재난,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)

###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

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재발생의 위험이 있어 **수급인**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하는 경우, **도급인**은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**승인**

## 기계·기구 안전조치

제38조, 제76조, 제81조, 제84조, 제93조

굴삭기, 고소작업대, 이동식크레인,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·장비 사용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### 작업계획서 작성

안전보건규칙 제38조

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**작업계획서**를 작성·준수하고, 근로자에게 주지

###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

고소작업대, 곤돌라 등 사용 시 **안전인증** 여부 확인 및 주기별 **안전검사** 실시

### 대여 시 조치

**임대인**은 기계의 보수·수리·점검내역, 부품 교환 이력 등의 정보를 임대인에 제공  
**임차인**은 운전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, 기계 작동 및 작업방법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

### 도급인의 안전조치

타워크레인, 활타기, 건설용리프트 조립·해체 시 작업자의 적정 자격여부, 기계기구 등의 결합여부 등을 확인하고, 작업방법 및 절차를 수립

## 화학물질 재해예방

제114~115조



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**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**를 게시하고 교육하여야 하며, 화학물질을 소분하는 경우 각 용기마다 **경고표시**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
## 건강장애 예방

제125조, 제128의2조, 제130조

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.

### 작업환경측정

소음, 분진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·평가

### 특수건강진단

유해인자 노출 대상 업무의 근로자 배치 적합성을 평가

### 휴게시설 설치

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